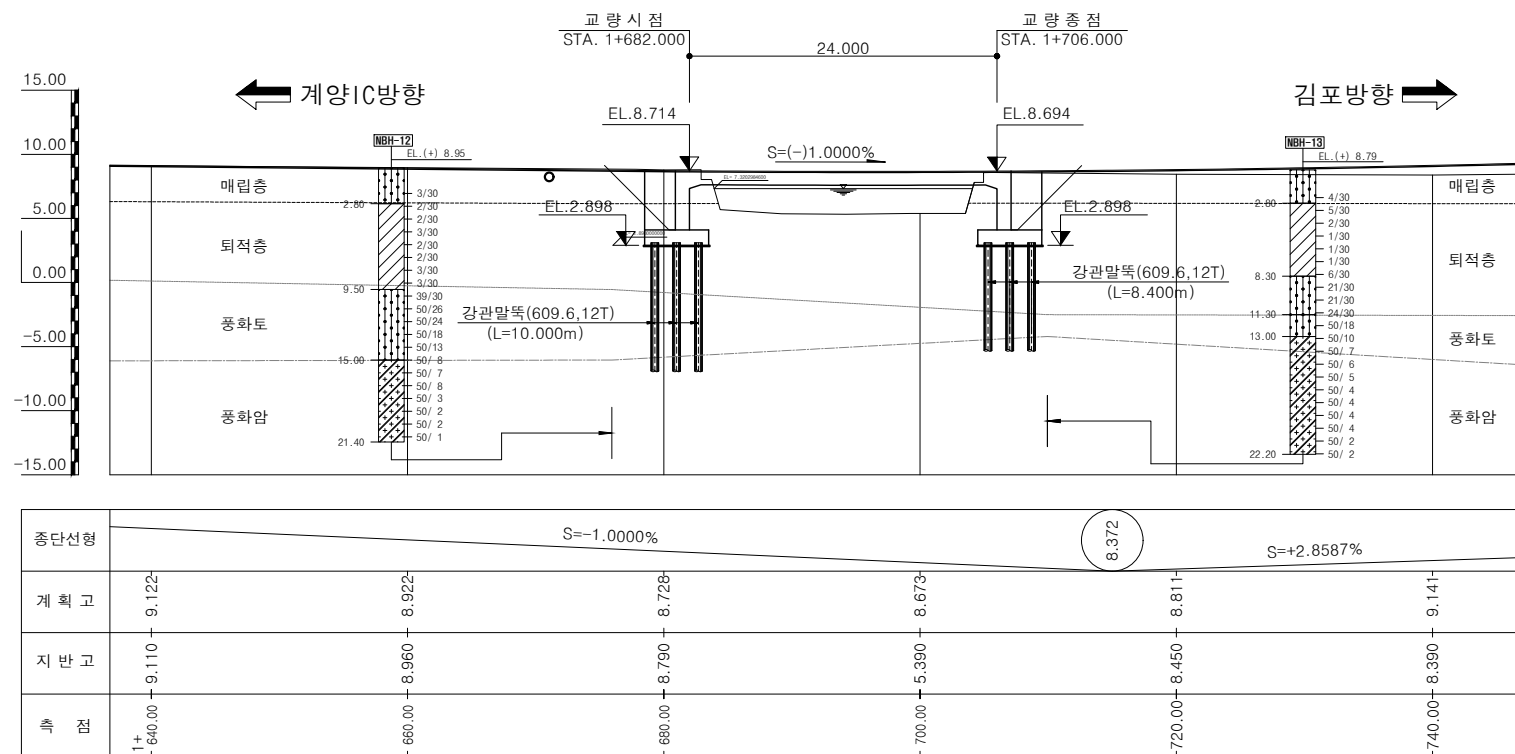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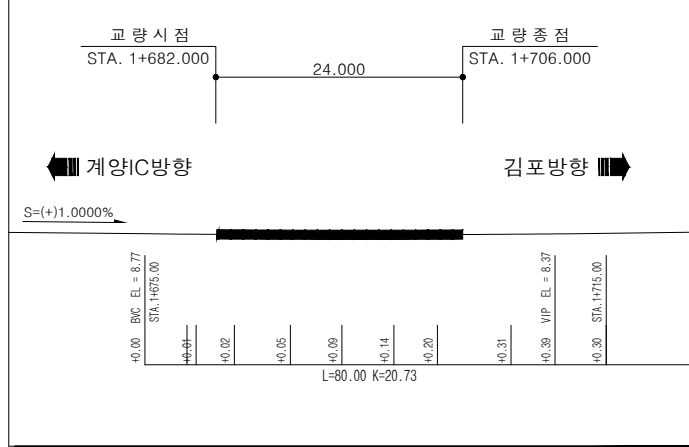
제 1 편
S = 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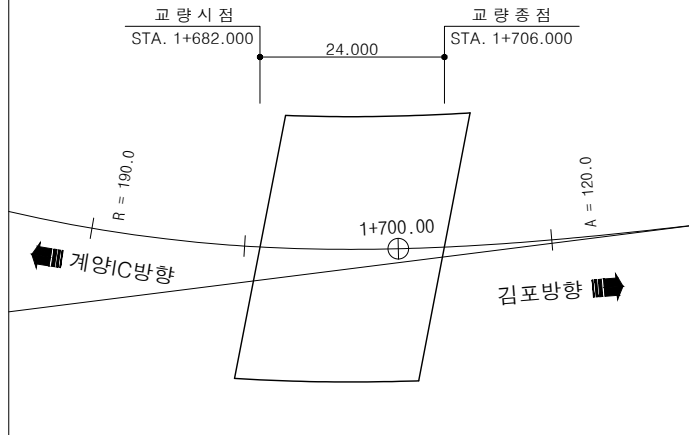
종 단 면 도
S = 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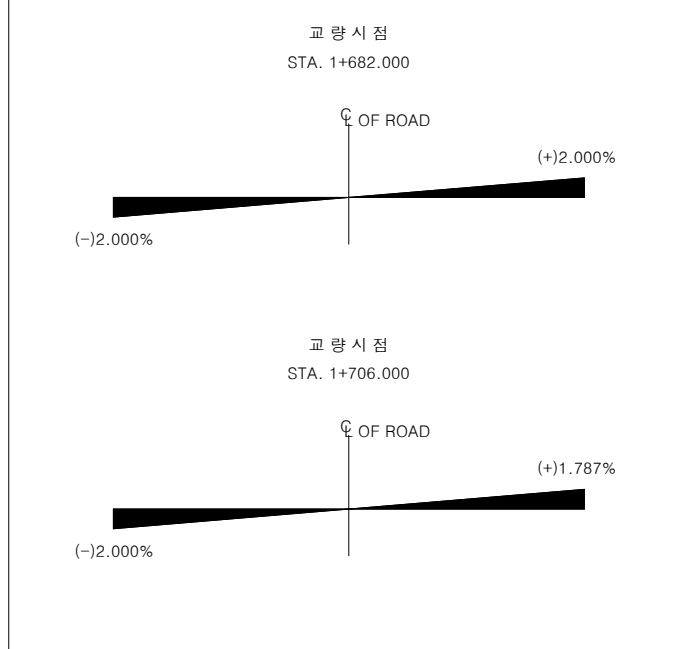
종 경 사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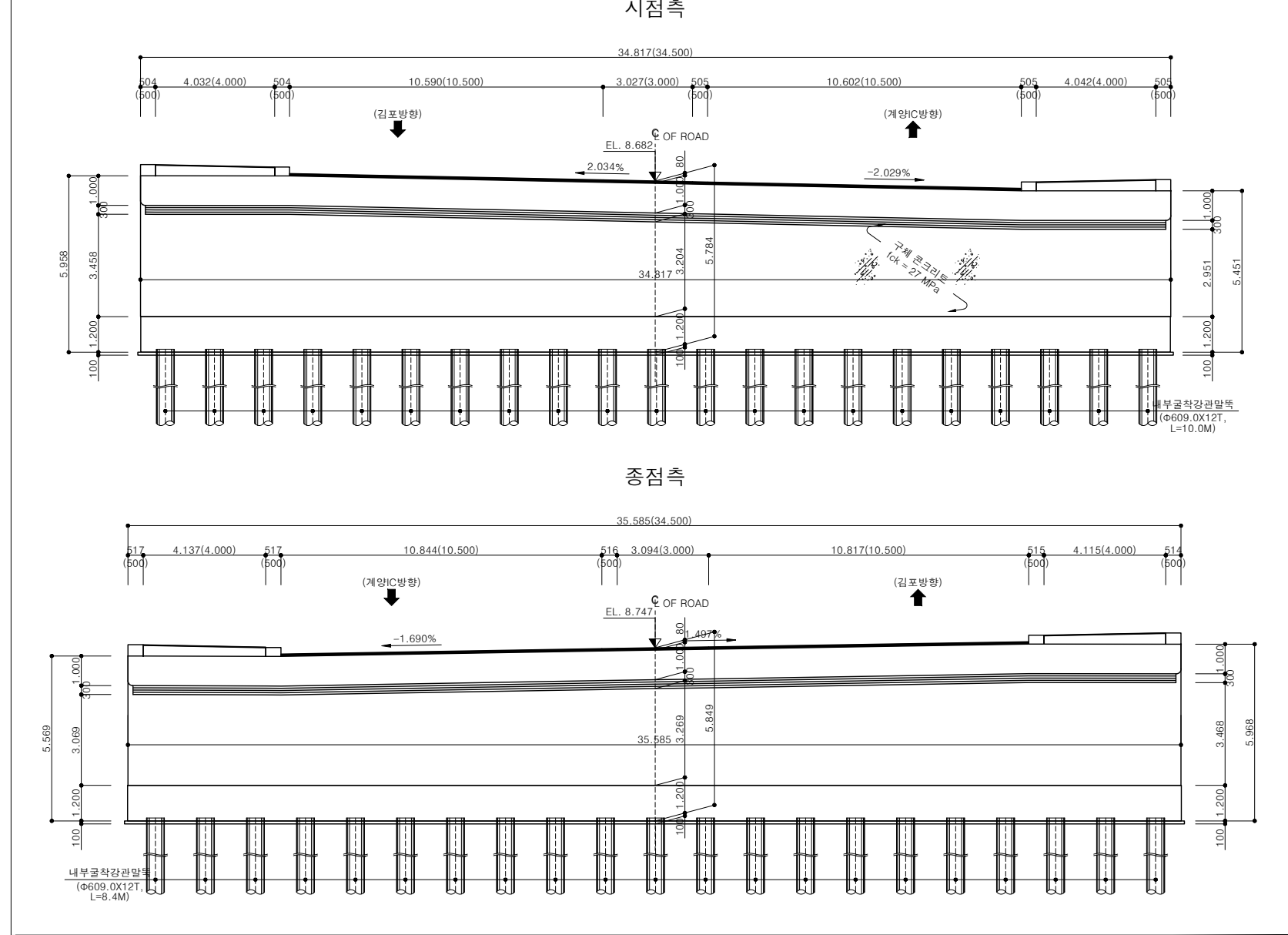
평면선형 개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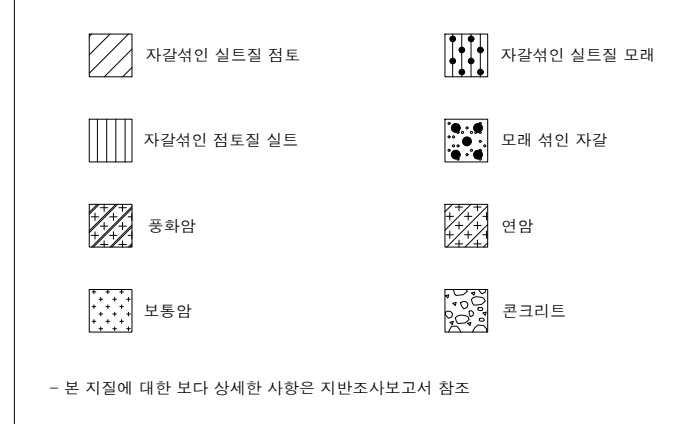
편 경 사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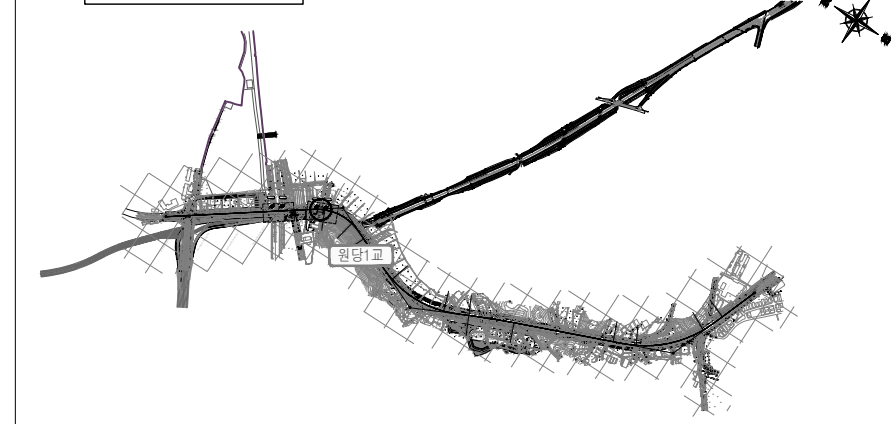
회 단 면 도



범례



KEY MAP



NOTE

총

- 구조물을 주어진 한 상태에서 축적하기 위하여 안전성과 내성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검토를 시행하여 안전 확보를 하고자 하고자 감량(단면 축소(단면))의 순서를 밝히다.
- 설계 시에는 충분한 안전을 못하기 위한 일반적(적) 지수(수) 변경, 지형(형)을 및 공사로 인하여 주어진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영)을 검토(검)해가 한(한) 상(상)을 밝히기 위하여 시공자는 필요시 상세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 교량의 정적, 축적된 축적(적)한, 기초의 말뚝, 하부구조의 각 부분(부)지, 교량의 축적, 축적, 주(주) 및 각종 구멍(구)의 크기와 말뚝(뚝)의 형상(상) 및 굴곡(곡)의 하중(중)을 교량의 정적 및 중요도에 따라서 각종 지수(수) 시공(공) 허용(용)을 현(현) 상(상)별(별) 정(정)해(해)하(하)다.

환경오염방지

1.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시공되는 모든 교량 건설 공사장에서는 시공기간중 비산먼지, 소음, 진동, 탁수 등으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환경 오염 방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 규제법 및 수질 환경 보전법 등 관계법규의 전하는 바에 따른다.

안 전 권

1. 교량 시공중에는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시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3. 상부공 가설시 안전등을 감안하여 Girder 가설에 적합한 크레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일 반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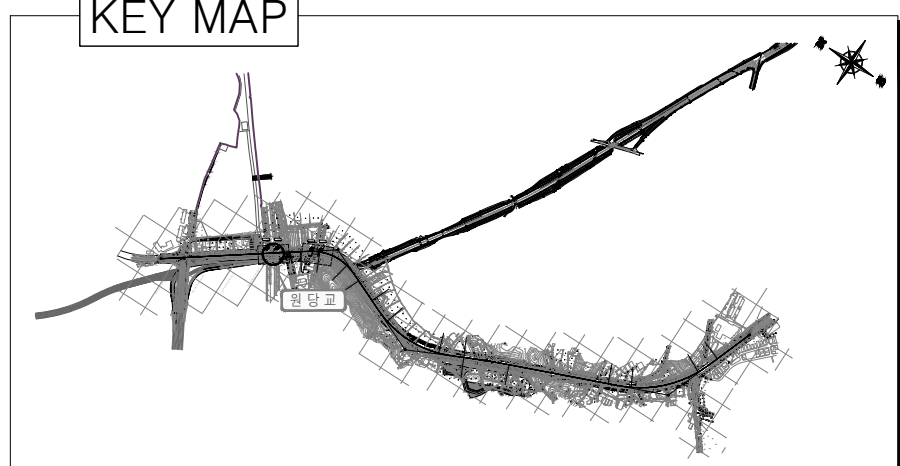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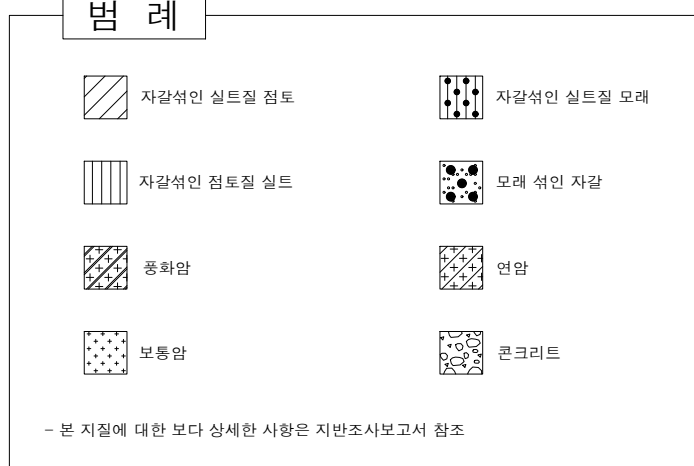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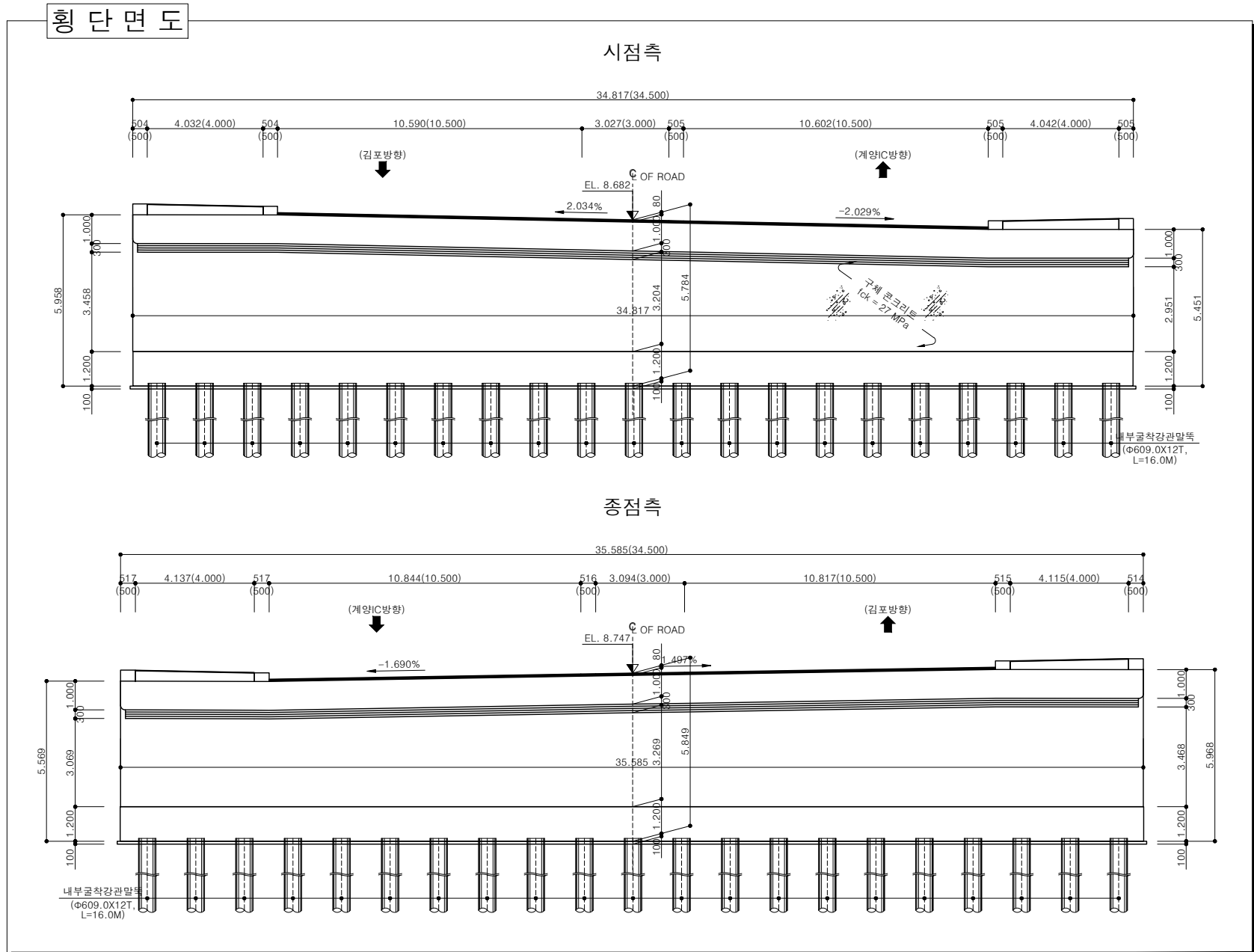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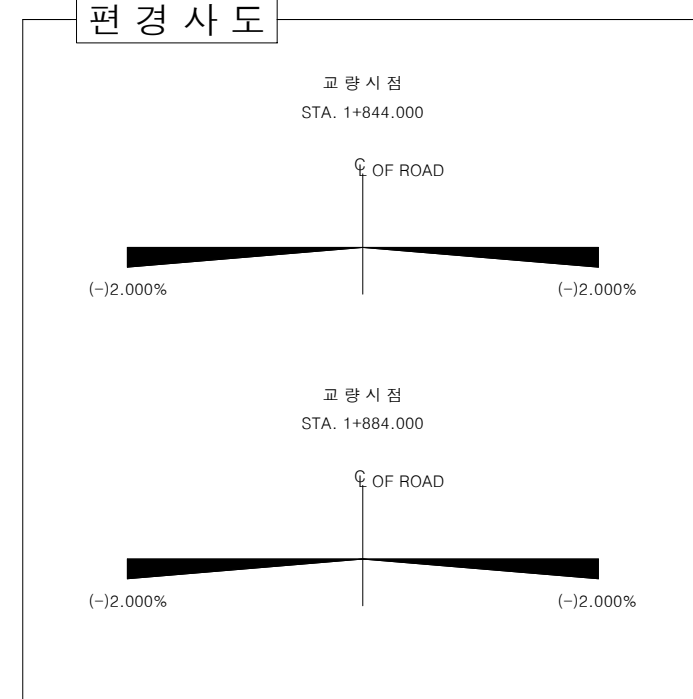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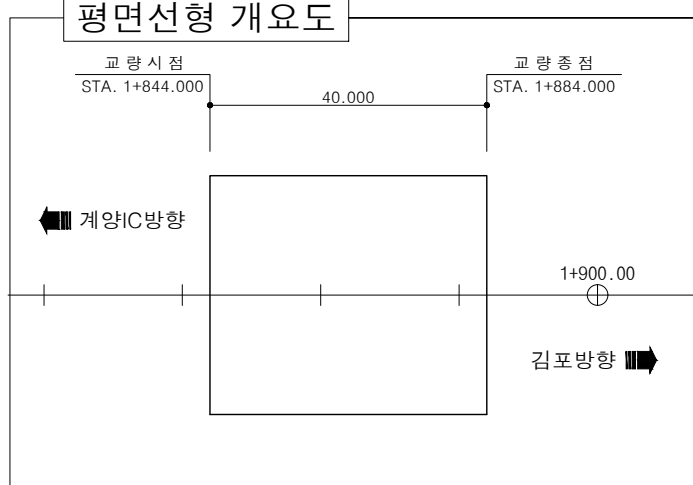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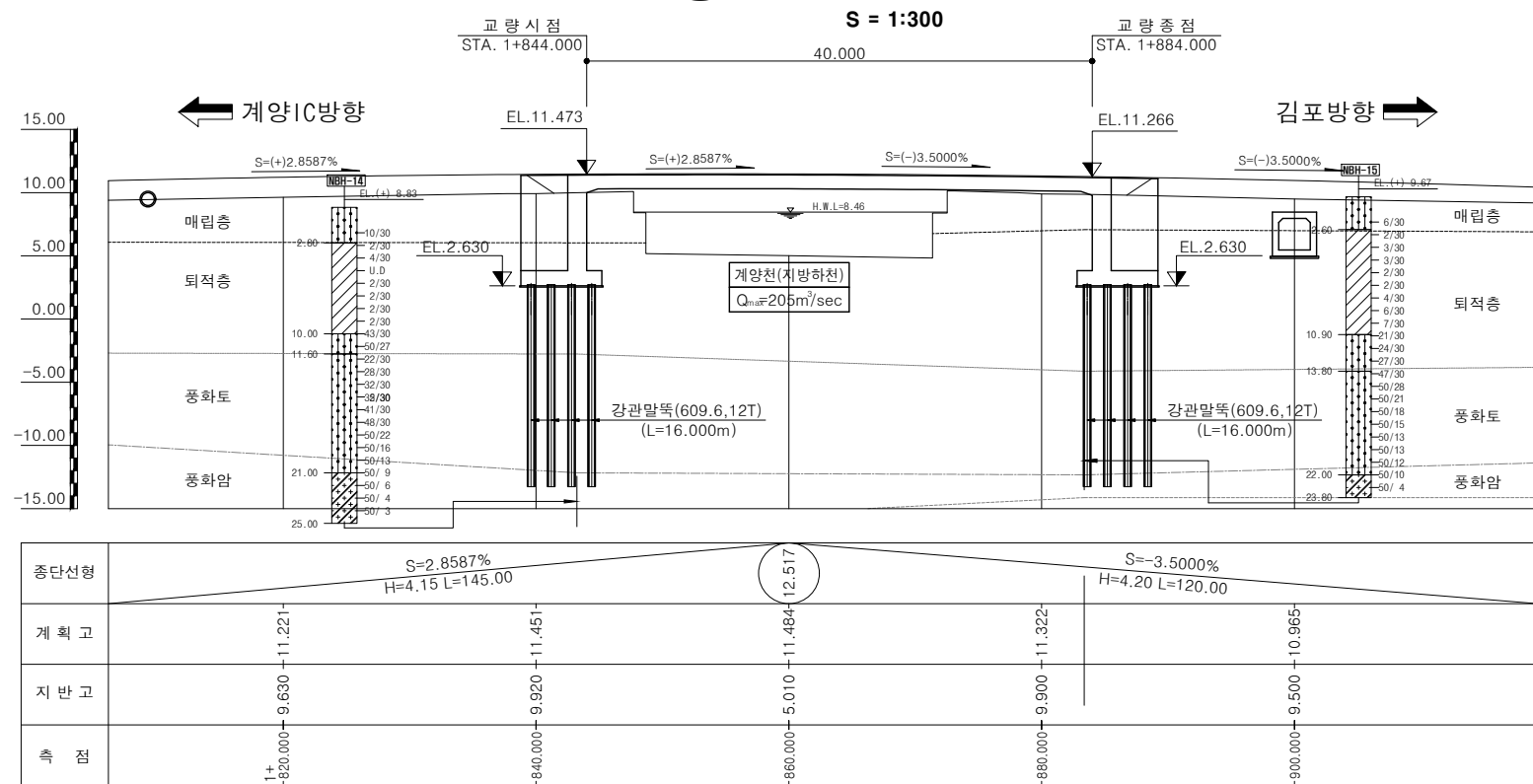
1. 확률론적 또는 매개변수적 실시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확인하여야 한다.
2. 모든 기초의 산도는 지반면에서부터 반경 방향 상으로 기초의 기층계층 수를 실시 기초의 산도를 조사하여 설계와 비교 분석 검증 콘크리트(산입관리원)의 순응을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지하수의 영향이 없는 건조한 상태로 타설하여야 한다.
4. 기초 공사시 타지 매설물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기초 굴착후 굴착 지반에 대한 Face Mapping을 시행토록 하고 기존지반의 절리나 불연속에 대한 정밀검사와 보강(Bracing)을 실시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상부 콘크리트 타설은 타설 순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산축이 일정경사 기본설계 개념으로 설계 하였는데 공사착각으로 동시에 산축이 일정경사 산축이고 이때 다른 구간을 경장하여 기존(산입관리원)의 순응을 특수한 사고경우에 따라 산축이다 한다.
8. 교각장치 및 산축이 일정경사는 학곡면에 종단경사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설치방안을 수립하여 교각장치(산입관리원)의 순응을 특수화 시공하여야 한다. 특히, 교각 BEAM 설치하는 곳에서는 학곡면 일차상과 종단구간의 영향을 따르고 교각의 위치 및 국소도는 SKWEK교 일차상 BEAM(BEAM, EAM, BEAM과 교대 종단면과 이차지를 통한 확인 하여 한다.
9. 교각장치 변경시 이차상 때면 평경(C.E.M) 평경을 다치하면 확인할 것.
10. 교각장치 좌표(X,Y)를 확인한 후 시공할 것.
11. 종단단형 및 평면단형에 대한 상세는 종합보고서의 산형개요서를 참조한다.
12. 산축이 일정경사의 산축에서는 반드시 배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산축이 일정경사가 설치되는 지점의 방호벽은 산축구간과 동일한 간격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14. 교량 및 좌측용은 교량의 단면에 적절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시방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5. 교량 및 교대에서는 굴절면에서부터 세부지침 지침을 시행하여 기초 및 사면에 대한 추가검정 필요요항을 포함한 추가 보장을 시행하여야 한다.
16. 교대 전면에는 교각장치 점검시점(=1.0M 이상) 설치하고 성토부는 교대 종단면에서 설치한다.
17. 콘크리트 부재 설치면이 두꺼운 경우 충분한 온도조절 제어방안을 수립후 시공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18. 강관벽체 시공시 시공하여야 그 결과에 따라 블록의 길이와 형태규정이 일치조건 및 설비도와 설치조건이 가변을 판단하고, 변경이에는 굴절면(건설입원관리원)의 순응을 통한 후 반영하여야 맞게 시공한다.
19. 도매무기시 시서하 진행하여 구조물에 변위는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20.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시방은 CHIPPING을 요철을 만들고, 청소한후 시방시공과 대와 평경의 등이 이루어진후 타설하여야 함.
21. 모든 구조물은 철근단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22. 도면외로 모든 수심 mm 이하이다.
23. 종단개척의 ELEVATION은 좌표측을 표기한 것임.

가 설 시

1. 가설방법 및 가시설물(가시설물, 교량상부 등바리, Earth Anchor, 가도, 기타)은 기본설계 개념으로, 시공전 현장 여건에 맞게 세부설계를하여 감독관(건설사업관리원)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2. Footing 콘크리트는 Massive하므로 수화열이나 건조수축 및 온도변화에 의한

 인천도시공사	사 업 명	인천계양 정제로 기능개선 및 확장 조사설계용역					△								위치정보		도 면 명	총평면도 원당1교	
	시설/공구						△								축 척	S = 1:300			
	(주)삼 안 (주)대 한	건설분야	토목	건설단계	실시설계	△	2023. 12	실시설계											
						개정번호	날짜	개 정 내 용			강동구	설열만	하선용	도면번호	C0020102-001	편철번호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설계자						적용표준	GED-01-1710

범례



총 설

1. 구조물을 지어주는 한화에너지가 적정하기 위하여 안전성과 구조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검토를 거쳐서 국가 상으로 적정하고 교육(건축사법규관련)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설계비용에 충분한 조사를 했는지 20일 일반인이고 지하수위 변동, 지반해설을 및 공사로 인하여 주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등 공사상 예기치 못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 공지는 반드시 사전에 토지를 영항등 공사상 예기치 못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 공지는 반드시 사전에 토지를 영항등 공사상 예기치 못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
3. 교량의 건강장, 특화된 육출물중공사, 기초와 물결, 하부구조의 각 부분에서, 교량의 강도의 강도, 폭넓은 각종 구멍의 크기와 콘크리트의 경량성 시 및 굴곡률의 허용치 등 교량의 성적 및 중요도에 따라서 각종 치수의 시공 허용 오차를 현장 사경별로 정해야 함.

환경오염방지

1.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시공되는 모든 교량 건설 공사장에서는 시공기간중 비산먼지, 소음, 진동, 탁수 등으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환경 오염 방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 규제법 및 수질 환경 보전법 등 관계법규의 전하는 바에 따른다.

안 전 관

1. 교량 시공중에는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시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3. 상부구조 가설시 안전등을 감안하여 Girder 가설에 적합한 크레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일 반 시

1. 축삭축은 매 단계를 토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물의 위치 및 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모든 기초의 토질은 지반언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초의 시공계획 수립시 지질의 상태를 토대로 실시하고 상이할 경우 감독관(건설시험관리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지하수위 영향이 없는 건조한 상태로 타설하여야 한다.
4. 기초 공시시 지하 배관물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사시 시행하여야 한다.
5. 기초 굴착시 굴착 위치에 대한 Face Mapping을 시행토록 하고 기존지반의 절리나 불균열등에 대한 정밀파괴와 보강 (Grouting)을 실시후 시공토록 해야한다.
6. 상부 콘크리트 타설은 타설 순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산속이음장치는 기본설계 개념으로 설계 하거나 공사학칙수 등 동시에 산속이음장치를 선정하고 기 다른 유안을 결정하여 감독관(건설시험관리원의 승인을 득후 시공하여야 한다).
8. 교각장치 및 산속이음장치는 학곡선에 등단시되어 따른 영향을 고려한 설치방안을 수립하여 감독관(건설시험관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특히, 제2차 BEAM을 설치하는 교각에서는 학곡선인 위 상부와 등단부에 영향이 많은 곳의 위치 및 곡선고 또는 SKEW고일 경우 BEAM과 BEAM, BEAM과 교대 복개의 이차의 통틀 확인 하여야 한다.
9. 교각장치 변형시 이에 따른 공명(E.L)을 다시한번 확인 할 것.
10. 교각장치 좌회(X.Y)를 확인한후 시공할 것.
11. 종단선형 및 평면선형에 대한 상사비는 종합보고서의 선형계개선을 참조한다.
12. 산속이음장치의 상류측에는 반드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산속이음장치기 설치되는 지점의 방호책은 산속유간과 동일한 간격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14. 교량의 방호물은 교량의 안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시방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5. 교대 전면에는 교각장치 점침시설을(B=1.0M 이상) 설치하고 성토부는 교대 보호책으로 부처 한다.
16. 콘크리트 부재 단면이 두꺼운 경우 충분한 온도조절 제어방안을 수립후 시공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7. 강관물류 시공시 시험시공하여 그 결과에 따라 말뚝의 길이와 한타공압이 지반조건 및 설계와 일치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변형시에는 감독관(건설시험관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18. 외매무기시 서서히 진행하여 구조물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19.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이음부는 CHIPPING하여 요철을 만들고, 청수후보 시방시 규정에 따라 변형의 시공이 이루어진 후 타설하여야 함.
20. 모든 구조물은 철근덜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모각기를 하여야 한다.
21. 모든 도로의 저수는 1m 단위일.
22. 종단개방의 ELEVATION은 조상 높이를 표기한 것임.

가 설 시

1. 가설방법 및 가시설물(가시설물, 교량상부 등바리, Earth Anchor, 가도, 기타)은 기본설계 개념으로, 시공전 현장 여건에 맞게 세부설계하여 감독관(건설사업관리원)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2. Footing 콘크리트를 Massive하므로 수화열이나 건조수축 및 온도변화에 의한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방법, 타설구획 및 크기를 결정한다.

사 업 명				인천계양 장제로 기능개선 및 확장 조사설계용역									위치정보					도 면 명	중평면도 원당교																
시설/공구													축 척			S = 1:300																			
건설분야				토목			건설단계			실시설계			강동구			설영만				하신용															
				개정번호			2023. 12			날짜			실시설계			개 정 내 용			과업책임자			분야책임자			설계자			도면번호		C0020102-001		편철번호		2.004	
																		적용표준		GED-01-1710															